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7 차 정 무 위 원 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료제출명령 확대 등〉

■ 강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447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3
IV . 검토의견	4
1. 무혐의·종결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4
2. 법원의 공정위에 대한 기록 송부 요구권을 제출 명령권으로 강화 등	9
3. 법원의 당사자 자료제출명령 범위를 침해 증명까지 확대	1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준현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7. 31.
3. 회 부 일 : 2024. 8. 1.

II. 제안이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로 인한 피해액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 기술 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행위를 소송을 통해 입증하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법적 조치 과정에 있어 여전히 중소기업에 불리한 제도적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임.

우선 현행법 제111조에선 법원이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범위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로 한정됨. 그러나 현행 「특허법」에는 소송 상대방에 대해 기술 침해의 증명에 필요한 경우 자료도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도 동일한 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또한 현행법은 기술 유용 등으로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해당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송

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이 위 규정에 따라 기록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이외의 자료에 대해서는 송부를 거부하는 실정임. 따라서 이와 관련해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하거나 보유하는 자료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제96조는 공정위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에 대한 이의신청권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 때문에 기술 유용 사례를 포함한 신고에 대해 공정위가 무혐의 또는 종결처리 결정을 하는 경우에 중소기업 등은 재신고하는 것 이외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나 수단조차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공정위 심사관 전결에 의한 무혐의나 종결처리 결정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등의 신고자가 결정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그리고 법원이 기술 침해의 증명을 위해서도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비밀엄수 의무가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법원이 공정위를 대상으로도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 또는 종결처리 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결정에 불복하는 신고인은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회의 결정으로 이를 경정하거나 재조사할 수 있음(안 제96조의2 신설).
- 나.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조사 또는 심사보고서, 기술검토 보고서 등을 포함한 증거 등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0조).
- 다.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명령 시, 해당 침해의 증명을 위한 자료도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비밀엄수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1조 및 제119조).

IV. 검토의견

1. 무혐의·종결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 또는 종결처리 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결정에 대하여 신고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초 결정을 경정하거나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96조의2(무혐의 결정 등의 불복) ① <u>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 또는 종결처리 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결정에 불복하는 신고인은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u> ② <u>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소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회의 결정으로 이를 경정하거나 당초 신고를</u>

현행	개정안
	<u>처리한 조사공무원과 다른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을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u>

□ 현행 제96조¹⁾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또는 종결처리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불가함²⁾.

□ 이에 개정안은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 등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위반행위 신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³⁾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며, 「검찰청법」 제10

1) 제96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5682 판결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신고인에게 그 신고 내용에 따른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한다는 내용의 회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고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조치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4)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불복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 종결처리 결정 등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통한 불복절차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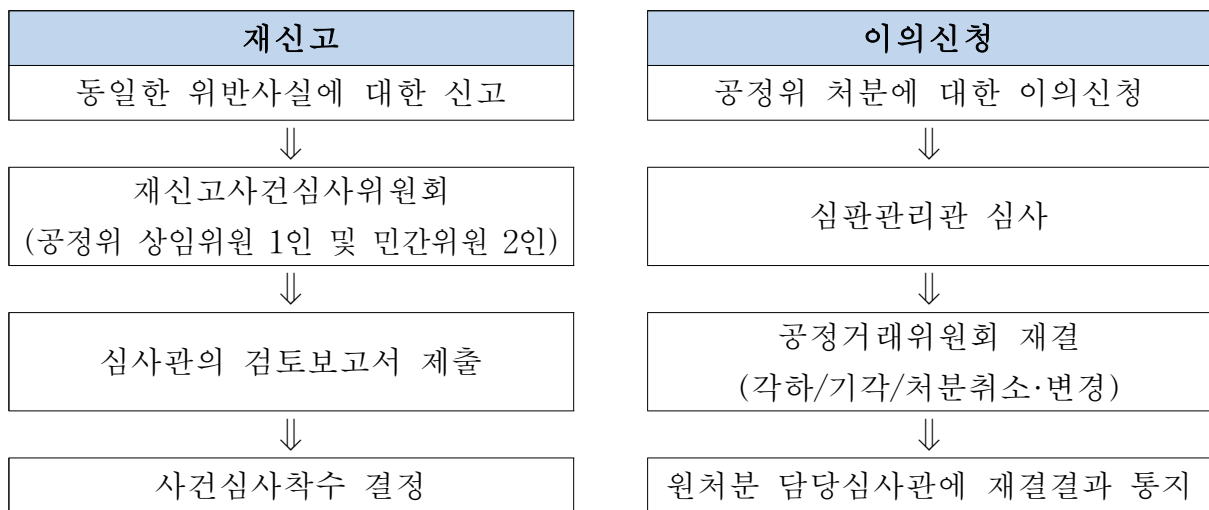
□ 현행의 제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종결처리 결정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해 재차 신고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는데, 재신고에 대하여는 당해 사건을 무혐의·종결처리한 조사공무원의 검토보고 등 ‘조사’ 단계에서의 재검토가 이루어져 그 인용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으며5),

□ 개정안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종결처리에 대한 이의

-
- 4)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346건의 재신고를 심의하고 67건(19.4%)에 대하여 사건심사착수를 결정하였음.

신청절차를 신설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하여 ‘조사’단계가 아닌 ‘심판’단계에서 당해 사건을 새롭게 검토하게 되어 이의신청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재신고 및 이의신청 절차 비교>



□ 개정안 입법을 전제할 경우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건 처리 결과 통지 절차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현행 제80조제3항⁶⁾은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통지하도록 하여 ‘신고인’은 무혐의·종결처리 결정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개정안에서 정하는 30일의 이의신청 제기기간이 도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6)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로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68조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송부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에게 피심인과 동일한 수준의 이의신청 절차를 보장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법원의 공정위에 대한 기록 송부 요구권을 제출 명령권으로 강화 등

- 개정안은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의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하여 해당 사건 기록 등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비밀엄수 의무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u>공정거래위원회</u> 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사건 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u>속기록</u>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의 <u>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u>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 ① --- ----- ----- ----- <u>공정거래위원장</u> ----- ----- ----- ----- <u>속기록, 조사 또는 심사 보고서, 기술 검토 보고서,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문가 감정의견서</u> ----- ----- ----- ----- <u>제출을 명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51조를 준용한다.
<신설>	

□ 특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요건 중 하나로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곧바로 사업자 등의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⁷⁾에서 법원은 위법행위 판단에 필요한 각종의 자료가 필요함.

□ 다만,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180건 요구에 대해 75건을 회신하여 회신율이 41.7%에 불과하고, 연도별 회신율은 2019년(41%), 2020년(45.2%), 2021년(43.3%), 2022년(36.4%), 2023년(40.4%)임. 이처럼 회신율이 낮은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에 대해 주로 의결서, 결정서 등 공개된 문서⁸⁾만을 송부하고 있기 때문임.

□ 개정안과 같이 법원의 기록송부요청권을 자료제출명령권으로 강화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수소법원은 충분한 자료 확보를 통해 행위의 위법성을 신속히 판단하여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7) 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29075

법에 정해진 시정조치가 확정되면 곧바로 사업자 등의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 시정조치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은 그 시정조치에서 지적된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고 다만 사실상 추정을 받게 되는데 그치는 것이다.

8) 의결서, 결정서, 심사관 전결 경고서, 신고인에 대한 회신문, 시정권고서 등

<최근 5년간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에 대한 공정위 회신 내역>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요청 건수	제공 건수	요청 건수	제공 건수	요청 건수	제공 건수	요청 건수	제공 건수	요청 건수	제공 건수	요청 건수	제공 건수
서울사무소	16	3	11	0	15	1	10	1	16	0	68	5
부산사무소	7	4	3	2	2	1	1	1	5	1	18	9
광주사무소	1	1	4	0	0	0	1	0	2	1	8	2
대전사무소	0	0	3	3	1	0	0	0	0	0	4	3
대구사무소	4	1	3	1	0	0	3	2	0	0	10	4
기업집단	2	1	0	0	0	0	0	0	0	0	2	1
시장감시	1	0	5	2	4	3	0	0	11	9	21	14
카르텔	5	4	3	2	3	3	3	0	8	6	22	15
기업거래	3	2	7	7	4	4	4	4	5	2	23	19
유통	0	0	3	2	1	1	0	0	0	0	4	3
합계	39	16	42	19	30	13	22	8	47	19	180	7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한편, 개정안은 자료제출명령(현행의 기록송부요구)의 상대방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안 제11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51조 및 제318조, 제311조제1항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9) 「민사소송법」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를 부과하기 위함으로 보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의 법인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과태료 부과 불가하기 때문임.

□ 그러나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¹⁰⁾하는 직위에 불과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청이라는 점¹¹⁾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자료제출명령의 상대방은 공정거래위원회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비밀엄수 의무 적용 배제의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위원회)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응하게 되는 경우 당해 자료에 포함된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사자(기업 등)의 영업비밀이 법원과 상대 당사자에 전달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 입법을 전제로 필요한 조치로 생각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해 공정위도 민사소송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정위 보유자료에는 피심인 뿐 아니라 제3자의 영업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한다.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3.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억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비밀, 타법에 따른 비공개자료, 최종 의결과는 다른 내부 검토 자료 등도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호장치 등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법원의 당사자 자료제출명령 범위를 침해 증명까지 확대

- 개정안은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에 “침해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1조(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u>해당 손해의 증명</u>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자료의 제출) ① ----- ----- ----- ----- ----- ----- <u>해당 침해</u> <u>및 손해의 증명</u> -----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뿐만 아니라 침해의 증명에 필요한 경우도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현행 「특허법」 제132조제1항을 참고하여 “침해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제출명령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자료제출 명령 대상 관련 조문 비교>

특허법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132조(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u>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를 위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u> 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u>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u>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자료의 제출) ① ----- ----- ----- ----- ----- ----- <u>해당 침해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u> ----- ----- ----- ----- ----- ----- -----.

□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제1항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위법행위, ② 손해의 발생, ③ 위법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④ 고의 또는 과실 등을 요구함.

□ 개정안은 현행 제111조가 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와 관련한 자료를 자료제출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련한 위법행위 판단에 있어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기 때문에¹²⁾ 법원은 침해(위법행위)에 관련한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침해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자료제출명령의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법과 공정거래법 체계는 차이가 있으므로 자료제출명령의 대상을 ‘침해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2) 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29075

법에 정해진 시정조치가 확정되면 곧바로 사업자 등의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 시정조치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은 그 시정조치에서 지적된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고 다만 사실상 추정을 받게 되는데 그치는 것이다.

문 의 처
02)6788-5109